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2870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케이

담당변호사 임장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8. 28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0. 18. 체결된 증여계약을 18,414,3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8,414,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18,414,375원과 공동담보 가액 65,000,000원¹⁾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채권액 18,414,3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8,414,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²⁾ 하므로 살피건대,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진원

별지

1)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65,000,000원을 공동담보가액으로 본다.

2) 피고는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, 2024. 4. 4.자 답변서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않다. 다만, 위답변서 중 ‘C에게 많은 빚이 있을 줄 몰랐다.’거나 ‘자신이 그러한 돈을 쓴 사실이 없다.’는 내용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택하여 판단한다.